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847
----------	------

제출연월일 : 2020.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6항에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축산·수의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한 축산·수의·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서 피해보상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보상 여부 결정을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안 제3조)

- 나. 심의회의 위원으로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4조)
- 다.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
- 라.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함(안 제13조)
- 마. 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 등(붙임)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2,470천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10. ~ 10. 5.(25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1건

※ 안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자의적 권한 행사우려가 있어 구체적 내용으로 검토 요청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각각 수정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수출 및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2.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시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 관할 방역관계관
5. 생산자단체 시 지부(지회, 협회 등 포함)의 장
6. 시 수의사회장
7. 구·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8.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대학 교수
9. 산업동물 취급 공·개업 수의사
10.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질병·축종(畜種) 등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를 둘 수 있고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및 구·군의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 관할 방역관계관 및 그 밖에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④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는 안건을 협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협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전파확산 요인·차단방역·소독방법·진단요령·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수당 등의 지급(안 제12조)

- 가축방역심의회 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민간위원 수당 총 2,470천원(가축방역심의회 1,820,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650)이 소요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조대호